#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18798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장종태・김문수・박용갑 장철민・이재강・이광희 박지원・민홍철・백승아 전진숙・정진욱 의원 (11인)

## 제안이유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사망 검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아동사망정보 등을 입력·저장 및 관리하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의 검토·예방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아동사망검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사망의 검토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사망”이란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을 말한다.
3. “아동사망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자료 또는 기록을 말한다.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나.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라.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
   마.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른 수사기록

사.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 조서

아. 「소년법」 제30조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리 기록과 관련 증거물

자.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된 소년에 관한 보고서·의견서 및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 보고서

차.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정보

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따른 정보·자료 또는 기록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자료 또는 기록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의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 예방 및 사망아동의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아동사망정보의 공개 및 이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아동 및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8조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제8조(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 국내에서 사망한 모든 아동의 아동사망정보를 검토하여 아동사망의 원인과 발생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그 대책이 법령·제도·정책에 반영 및 이행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 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아동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⑤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은 그 위원의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보고서(이하 “아동사망검토예방보고서”라 한다)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역별·원인별 및 기타 분류에 따른 아동사망 현황 통계
2.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분석
3.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
4.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 결과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아동사망검토예방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개별 아동 및 그 가족, 후견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
2. 아동학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
3. 사망한 아동이나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정보

④ 위원회는 아동사망검토예방보고서에 따라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사항이 법령·제도·정책에 반영 및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및 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아동사망 사건 중 국가 또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선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사건 검토팀을 구성하여 중대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예방 가능한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홍보 등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아동사망검토예방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반영 및 이행 여부 점검·평가, 제5항에 따른 이행 계획 및 이행 여부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15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위원과 보조인력 등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사망정보를 입력·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하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통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③ 위원회는 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아동사망검토센터) ① 위원회는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동사망검토센터(이하 “아동사망검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아동사망검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2. 예방 중심의 사망아동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 개발·구현 및 유지
3. 사망아동 검토 방법·절차의 연구 및 개발
4. 제20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제20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간의 네트워크 지원

6.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아동사망검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제20조(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이하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아동사망의 원인 등 검토
2. 관할구역 내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통계자료 작성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
4. 관할구역 내 사망한 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 담당자, 검사·변호사·검시조사관 또는 사법경찰관

리(수사경과를 이수한 자에 한한다)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교육 전문가, 아동보호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예방 전문가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의 위촉을 거쳐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는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검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상담전문가 및 보조인력 등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운영과 사무국 종사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업무에서 제척된다.

1.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이 개별 사망아동 대상자(아동사망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이 개별 아동사망과 관련하여 당사

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에 관한 진료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② 사망아동의 유족 등은 개별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에 있어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의 검토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해당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개별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 등) ①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관할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아동에 대하여 아동사망정보를 검토·분석한 보고서(이하 “아동사망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질병이환 또는 외인(外因)으로 인한 사망아동

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임상적 특징이 발견된 사망아동으로서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는 사망아동

② 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 아동사망에 관한 검토 결과

2. 아동의 사망이 예기치 않은 사망이었는지 여부

3. 아동의 사망을 야기한 위험요인

4. 아동의 사망이 예방 가능한 사망인 경우 아동의 사망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

5. 아동의 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 권고사항

6. 유가족 상담 및 복지지원 연계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에서 아동사망이 발생한 때에는 암호화된 아동의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알리고, 알린 날부터 4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개별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아동사망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사망아동의 유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망 전후에 각종 사회보장서비스가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집·생산한 서류·자료·정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아동사망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⑨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작성이 완료된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아동사망 서류·정보·기록 제출 의무) 사망아동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에게 아동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정보 또는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25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사망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사망 관계 전문가,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사망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는 “자료 제출자 또는 의견 진술자”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또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본다.

④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검토 또는 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원회 위원 등의 면책) 위원회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의 위원은 위원회나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 업무의 독립성 및 사법절차와의 분리)

① 이 법에 따른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 업무는 아동사망의 예방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사망 검토 과정 및 결과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가 아동사망 검토와 관련하여 수집·작성하거나 위원회 또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진술, 회의록, 의견서, 분석보고서 등 아동사망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일체의 산출물은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③ 아동사망검토예방보고서 및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산출물 등은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 모든 사법 또는 준사법 절차에서 유죄 또는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외의 독립된 출처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 또는 위원회·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제출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원자료에 대해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아동사망 사실에 대한 통보나 관련 서류·정보 또는 기록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